

의원 여러분!

축산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이래도 좋습니까?



축산업자는 지출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 및 고정자산 투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박 내 춘

(세무사, 열림축산 대표)

1.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축산업은 부가가치세 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그 생산물을 거래하는데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견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혜택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자(이하 “담세자”라 한다)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다른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목이며, 축산업자는 여기에서 담세자가 아닌 납세자로서의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 축산업자가 사료를 매입할 때 사료가격이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추가로 지불하여야만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그 부가가치세 담세자는 실제로 사료를 매입하는 축산업자이며, 사료공장은 그 축산업자가 부담한 세금을 합하여 3개월에 한번씩 관할 세무서에 납부만 하면 소임이 끝나는 거래 징수자 즉 납세자에 불과한 것이다.

위와 같은 예로 미루어 부가가치세에 관한 현재의 축산업자는 수혜자가 아니라 최종 부담자의 위치에 있다. 그 부담액이 어느정도 일까 하는 것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양돈업의 예를 들면, 양돈업자가 지출하는 사료비, 약품비, 자재비, 시설장치, 광열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부담액의 합계액은 농장전체 판매액의 약7% 수준에 이를 것인바, 이런 정도의 부담이라면 양돈업자로서는 전체 인건비와 맞먹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농장경영에 심대

한 영향을 주는 금액이다.

2. 재화의 유통측면에서 본 축산업자의 위치

원래 축산업자가 면세 사업자의 범주에 든 것은 그 생산물이 원시 생산물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하나로서

첫째는 이들 생산업자가 농어민 영세 사업자로서 기장능력 등에 비추어 납세자로서 거래 징수하도록 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서이고,

둘째는 이들 생산물은 대부분 생활 필수품으로서 10% 단일 세율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데 그 면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 필수품으로서 일반 국민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하자는 취지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업자가 영세함으로 기장능력 등으로 비추어 보아 거래 징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의 범주에 넣은 것은 사실상 조세징수 편의상의 문제일 뿐이지, 사업자 자신에게는 하등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종 담세자로서의 부담만 있을 뿐인 것이다.

재화의 유통측면에서 본 축산물은 하나의 중간 생산물로서, 사료와 시설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되어진 후 그것이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단계인 식탁에 오르던가 아니면, 다른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다시 사용된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을 다음 단계로 전가(轉嫁)시키는 것이 그 특성인바, 당연히 축산물도 면세물품이 아니라면 그 세부담을 다음 단계인 유통업체나 식품가공 회사에

“
부가가치세법 원리로 보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형태로든
다음 단계로 전가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도
유독 축산물과 같은 유의
물품에는 이 전제가 성립되고
있지 않다.
”

전가시키면 될 터이지만, 축산물을 면세물품으로 규정함으로 그 전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축산업자는 매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만 할 뿐이지 타인으로부터 본인이 부담한 세액을 징수하지는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그 결과 당연히 동 부가가치세는 본인 부담으로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원가의 한 요소가 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그만큼 생산원가가 커지게 되며, 그 만큼 손해액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축산물 생산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전가(轉嫁)가 가능한가?

세법에서 전가(轉嫁)라 함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부담한 일정액의 조세를 실제로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다음 단계인 거래자에게 그 부담액을 넘겨 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맥주 한 병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세가 100원이라 하면 물론 국가는 그 맥주를 제조하는 자로부터 100원을 징수하지만 실제로 그 세금 100원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

비자가 된다.

그렇다면 축산업자가 사료업자로 부터 전가 받은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이 이미 원가로 구성되었는바, 그 금액 만큼을 다시 다른 유통업자 혹은 식육 가공업자에게 전가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소박한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부가가치세법 원리로 보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형태로든(그것이 세금 형태이건, 가격상승 형태이건) 다음 단계로 전가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축산물과 같은 류의 물품에는 이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주지 하다시피, 축산물의 판매가격은 완전히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독과점 품목이나 정부결정 가격품목처럼 원가가 얼마이니 판매가격은 얼마여야 한다라는 식의 가격형성 체계가 아니라, 때로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 형성되는 때가 비일비재한 것이 축산물이다. 동업자끼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비정한 세계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국제경쟁력에서 까지 수요·공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의 조세의 원가 형태의 전가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4. 유사 타업종과의 비교

이번에는 똑 같은 생필품 성격의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여타업종에 대해 같은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먼저 축산업과 아주 유사한 업종으로 수산업을 들수 있다. 똑같이 과세 재화를 주 원자재

혹은 주 비용으로 하여 면세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수산업의 경우 크게 원양어업과 연근해 어업의 둘로 나눌 수 있는바, 원양어업의 경우는 외화 획득 사업이므로 논외로 하고, 연근해 어업의 경우는 그에 사용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액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78조 제1호) 농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도 또한 같다.

유독 축산업에서만 그와 유사한 혜택이 없는 것이다.

축산업이 국제경쟁력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인가?

사료비가 전체 판매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이 이렇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데도 값싼 축산물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관계 당국으로선 국내 축산업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사료회사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擬制買入稅額控除) 제도에 대하여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사료 제조업자는 축산업자로 부터 사료대금 이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중 일부를 사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가 부문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국가에 조세로 납부한다.

이른바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이다.

면세로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니 그에 상응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이 축산업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 원재료 내에 매입세액이 이미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그 세액 산출방법이 「세액공제제도」인 만큼 완전히 그 세액 전체를 다음 단계로 전가시켜 버리는 구조하에서 그 본래의 취지가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여하튼, 여기서 무슨 법 취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우리 축산업자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한 세금의 향방에 있다.

분명한 것은 축산업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세금의 일부가 의제 매입세액이란 명목으로 사료 제조원가의 일부로 충당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료 제조업자의 다음단계가 일반 과세자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면세업자인 축산업자이기 때문에, 완전 면세가 아닌 불완전 면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그 효과면에 있어서 의제 매입세액의 실제 부담자는 축산업자가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못내 찜찜하고 아리송한 것이다.

그 의제 매입세액이 총 사료곡물 매입가격의 약 5%에 이른바, 관계당국에서 그 금액의 합리적 사용 여부를 조사 확인한다고는 하나, 축산업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역으로 사료 제조원가의 감소 요소로서 사용된다는 데, 도대체 회사마다 제조원가가 다른 실정에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본인이 낸 세금의 합리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하여 얼마나 사료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관계 당국은 바로 그 의제 매입세액의 실제 납부자가 축산업자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부

“

**관계당국은 바로 그
의제매입세액의 실제 납부자가
축산업자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축산업자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분에 대해서만은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명히 축산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6. 결언

1977년 재무부 발행 “부가가치세법 해설”이란 책자에 쓰여진 「부가가치세 제정 목적」에는 이런 귀절이 있다.

“셋째, 투자에 대한 간접세 부담을 없애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 –운운, 이 귀절만 본다면 축산업에 있어서만은 철저히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확실하다.

양돈업에 있어서 투자액은 모든 두당 약2백만원(토지제외)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1백 두농장을 일으키려면 약 2억원의 투자 재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투자액 2억원이면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약1천8백만원에 이른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이다.

양돈업자는 이런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면서도 사실상 국가로 부터의 도움은 거의 없는 것이니, 말로만 농업을 발전시켜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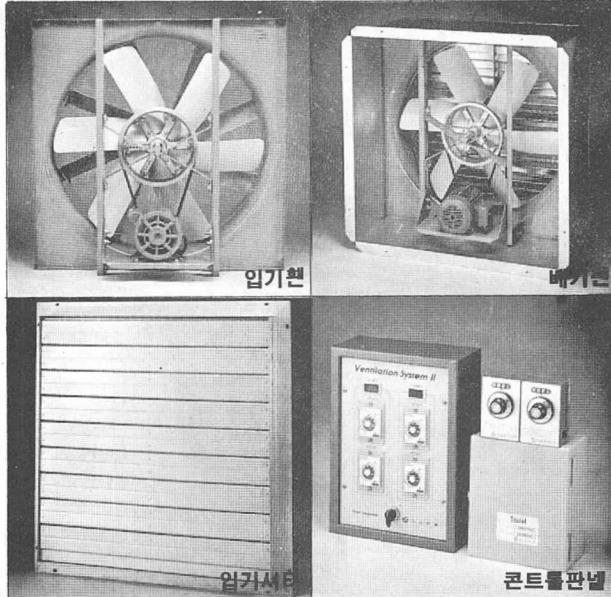
경쟁력을 길러 수입에 대항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이 없는 관계 당국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세감면 규제법등에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 및 고정자산 투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라는 규정이 꼭 삽입될 것을 요망한다.

이는 유사업종과의 형평 측면에서나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환기시설

- 환경관리는 수익증대의 要諦 -



- 고온스트레스로부터 수익성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 사료섭취(효율) 및 증체항상, 질병방지, 물론 육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드립니다.
- 환절기와 동절기에 대비한 환경 제어기능 까지도 완벽히 구비하여 수익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설은 사용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꼭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완벽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기 시설은 계절적 변화와 일교차속에서 오히려 기축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太乙物產

서울 관악구 신림 4동 497-1
☎ 867-5190 FAX. 862-7054